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0.24.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1-335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0.24.(금)	2025.11.03.(월)	2025.11.04.(화)	2025.11.05.(수)	2025.11.12.(수)	2025.11.13.(목)~ 2025.11.22.(토)	2025.11.24.(월)~ 2025.11.27.(목)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거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풍무역세권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사전공급신청 접수 30세대 제외 1,494세대 일반분양)
-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법」 제2조제24호바목에 의한 “공공택지”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가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설립한 동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시행자[(주)풍무역세권개발]가 동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 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및 이주대책 대상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5/themark/>)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안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2025.06.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2025.10.15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24.(금)**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1.03.(월)	2025.11.04.(화)	2025.11.05.(수)	2025.11.12.(수)	2025.11.13.(목)~ 2025.11.22.(토)	2025.11.24.(월)~ 2025.11.27.(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건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 1661-335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김포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다만,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청 주택과-35986호(2025.10.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 일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12개동 총 1,524세대 중 이주대책대상자 30세대, 일반분양 1,494세대[특별공급 970세대(기관추천 139세대, 철거주택소유자 10세대, 다자녀가구 149세대, 신혼부부 344세대, 노부모부양 45세대, 생애최초 28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가목 3)에 의거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이주자주택 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주택임.

(이주대책 대상자 사전공급신청 접수로 선정된 30세대를 제외한 1,494세대를 일반분양합니다.

■ 입주시기 : 2028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이주 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철거주택 소유자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5000514	01	074.0807A	74A	74.0807	24.9259	99.0066	53.8205	152.8271	47.5284	594	-	59	-	60	138	18	113	388	206	25
		02	074.0362B	74B	74.0362	25.4114	99.4476	53.7882	153.2358	47.4999	255	10	24	2	25	60	7	50	168	77	9
		03	084.6290A	84A	84.6290	27.4420	112.0710	61.4840	173.5550	54.2960	590	20	54	8	60	138	18	113	391	179	21
		04	084.9946B	84B	84.9946	28.4102	113.4048	61.7497	175.1545	54.5305	56	-	1	-	3	6	1	5	16	40	2
		05	084.5088C	84C	84.5088	26.8043	111.3131	61.3967	172.7098	54.2188	29	-	1	-	1	2	1	2	7	22	1
	합 계										1,524	30	139	10	149	344	45	283	970	524	58

-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는 총 공급 세대(1,52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반드시 건본주택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4.0807A	074.0362B	084.6290A	084.9946B	084.5088C
약식 표기	74A	74B	84A	84B	84C

약식 표기	층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계약시	1개월 내	2026.04.15	2026.09.16	2027.02.17	2027.09.22	2028.02.16	2028.07.12	입주지정일
74A	1층	18	249,349,117	334,650,883	584,000,000	10,000,000	4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2층	18	253,618,794	340,381,206	594,000,000	10,000,000	4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3층	25	257,888,470	346,111,530	604,000,000	10,000,000	5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4층	25	261,731,180	351,268,820	613,000,000	10,000,000	5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83,900,000
	5~9층	125	265,573,889	356,426,111	622,000,000	10,000,000	5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86,600,000
	10~19층	222	268,135,695	359,864,305	628,000,000	10,000,000	5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88,400,000
	20층 이상	161	271,124,469	363,875,531	635,000,000	10,000,000	5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190,500,000
74B	1층	9	248,922,149	334,077,851	583,000,000	10,000,000	4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74,900,000
	2층	9	253,191,826	339,808,174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3층	9	257,034,535	344,965,465	602,000,000	10,000,000	5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60,200,000	180,600,000
	4층	9	261,304,212	350,695,788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5~9층	45	264,719,954	355,280,046	620,000,000	10,000,000	5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62,000,000	186,000,000
	10~19층	90	267,708,728	359,291,272	627,000,000	10,000,000	5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88,100,000
	20층 이상	84	270,270,534	362,729,466	633,000,000	10,000,000	5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189,900,000
84A	1층	17	279,236,854	374,763,146	654,000,000	10,000,000	5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2층	17	283,933,498	381,066,502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3층	21	288,630,142	387,369,858	676,000,000	10,000,000	5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02,800,000
	4층	21	292,899,819	393,100,181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5~9층	105	297,169,496	398,830,504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10~19층	210	300,158,269	402,841,731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20층 이상	199	303,147,043	406,852,957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84B	1층	1	271,551,436	364,448,564	636,000,000	10,000,000	5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2층	1	275,394,145	369,605,855	645,000,000	10,000,000	5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3층	2	280,517,757	376,482,243	657,000,000	10,000,000	5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4층	2	285,214,401	382,785,599	668,000,000	10,000,000	5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5~9층	10	289,057,110	387,942,890	677,000,000	10,000,000	5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03,100,000
	10~19층	20	292,045,884	391,954,116	684,000,000	10,000,000	5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20층 이상	20	295,034,657	395,965,343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07,300,000
84C	1층	1	279,663,821	375,336,179	655,000,000	10,000,000	5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2층	1	283,933,498	381,066,502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3층	1	288,630,142	387,369,858	676,000,000	10,000,000	5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02,800,000
	4층	1	292,899,819	393,100,181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5~9층	5	297,169,496	398,830,504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10~19층	10	300,158,269	402,841,731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20층 이상	10	303,147,043	406,852,957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 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김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관련 소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및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4A	74B	84A	84B	84C	합 계
이주대책 대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8호)		-	10	20	-	-	30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3	8	-	-	19
	장기복무 제대군인	8	4	7	-	-	1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9	3	7	-	-	19
	장애인	경기도	4	8	-	1	22
		서울특별시	3	8	-	-	19
		인천광역시	4	8	1	-	22
	중소기업근로자	8	3	8	-	-	19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4조)		-	2	8	-	-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30	13	30	2	1	7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0	12	30	1	-	73
생애최초 특별공급		113	50	113	5	2	28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	7	18	1	1	45
신혼부부 특별공급		138	60	138	6	2	344
합 계		388	178	411	16	7	1,00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2-1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용면적 85㎡ 이하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주)풍무역세권개발)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추천기관	■ (주)풍무역세권개발
당첨자 선정방법	■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또는 다른 유형의 주택형 선택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함.] ■ 이주대책 대상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됨으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특별공급 대상자 중 계약체결을 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자(당첨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

2-2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9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및 이주대책 대상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재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전용면적 85㎡ 이하 : 10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기관((주)풍무역세권개발)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당해 사업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추천기관으로부터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제외)
추천기관	■ (주)풍무역세권개발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조성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불필요) ■ 추천기관이 선정하여 통보한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확정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청약신청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경로 :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특별공급 > 주택명 선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김포시 및 경기도)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 모 가족</td><td>5</td><td>·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td></tr> <tr> <td colspan="5">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td></tr>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 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 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구분

대상자

내용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비고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517호(2024.03.25.)]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head><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head><tbody><tr><td rowspan="9">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9">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tr><td>3명</td><td>20</td><td></td><td></td></tr><tr><td rowspan="9">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9">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tbody></table>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본 주택은 60㎡ 초과 주택형만 공급되므로, 단독세대 신청자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구분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비고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확인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임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4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11.0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접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 1661-3353	· 일시 : 2025.11.12.(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 공급	1순위	2025.11.04.(화) 09:00~17:30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2025.11.05.(수) 09: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 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1.12.(수) ~ 2025.11.2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1.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9항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대상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자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구분	서류 제출 기간	대상자	접수 장소	비고
내용	2025.11.13.(목) ~ 2025.11.22.(토)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건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방문 예약제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천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 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v”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v”로 설정하여 발급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비속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인터넷발급 불가)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의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해당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해당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정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의 3개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필수 제출 - (발급기관) 건강보험공단 ※ 공단 직접방문 필수(온라인 발급시 3개년도 출력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에 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해당 하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으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2024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국세청홈택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① 국세청홈택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②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세무서 ④ 국세청홈택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주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1.24.(월) ~ 2025.11.27.(목) 4일간 10:00 ~ 16:00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건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 상실)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 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수협은행	1010-2718-0401	코리아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수협은행(납부 계좌 : 1010-2718-0382),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계좌이며, 발코니 확장 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좌는 별도이오니 이점 확인하셔서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도 명시될 예정입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에 제출 바랍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전자수입인지 (사본)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 씩 균등 부담(※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아파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계약,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에 따른 인지세 각각 별도 납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접수장소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로 설정하여 발급)
	○		위임장	본인(당첨자)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 상기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건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1/2씩 균등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으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 된 실거래가(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시 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계약	1. 공급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 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규제지역지정, 중도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한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주택 계약자, 법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김포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 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하며,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대출취급기관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같음)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 상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조명 특화, 수납 특화, 주방 특화, 욕실 특화, 평면 특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84C
공급금액	6,860,000	7,438,000	6,241,000	9,289,000	6,644,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분양주택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사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전동빨래건조대,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부위 마감 연장, 거실 아트월 및 우물천장 확대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건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환기부족, 생활환경 등으로 결로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힌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우천시 비확장 발코니 내부에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추가선택 품목

- 추가선택 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4A – 74B 기준 / 84B,C – 84A기준)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1. 라이프업 스타일링(유상)

■ 현관 중문

(단위: 원, VAT 포함)

선택항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현관 중문	전타입	미설치	원슬라이딩 자동중문 + 시트판넬	74A	2,120,000	
				74B	2,120,000	
				84A	1,990,000	
				84B	2,020,000	
				84C	2,05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규격,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복도 벽체는 시트판넬로 마감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84C 타입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중문 선택형(2안) 옵션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타입	1. 바닥 : 전 실 강마루 (섬유판) 2. 벽 : 거실아트월 타일 (600*600) + 실크벽지	1. 바닥 : 전실 광폭 강마루 (섬유판) 2. 벽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흡착벽지 (천장 제외) 3. 복도 1면/소파뒷벽 시트판넬 + 간접조명	74A	4,660,000	-
				74B	4,700,000	
				84A	4,990,000	
				84B	4,700,000	소파뒷벽 간접조명 제외
				84C	5,020,000	-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마감재 옵션에 따라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흡착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타입의 평면 구성 상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소파뒷벽의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과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거실/침실 조명 특화	전타입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특화조명기구(거실, 침실)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엣지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74A	1,590,000	-
				74B	1,590,000	
				84A	1,660,000	
				84B	2,510,000	침실3 특화 기본형 (1안) 선택 시
				84B	2,320,000	침실3 특화 선택형 (2안) 선택 시
				84C	1,660,000	-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은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1안)은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 중 주방은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유상)

■ 현관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현관 수납 특화	전타입	1. 현관바닥 : 타일 (600*600) 2. 기본 신발장 3.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1. 현관바닥 : 대형타일 (600*1,200) 2.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 내부 디자인선반(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조명 3. 현관창고특화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4. 현관입구 시트판넬 마감	74A	1,370,000	-
				74B	1,370,000	
				84A	1,560,000	
				84B	1,560,000	
				84C	1,68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 디자인선반(조명포함)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방향 등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 창고 내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현관입구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C 타입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옵션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복도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복도 수납 특화	전타입	복도팬트리 : 여닫이도어	복도팬트리 : 폴딩도어(가구판넬 포함) + 시스템선반 특화	74A	780,000	-
				74B	800,000	
				84A	1,160,000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84B	1,210,000	-
				84C	1,080,000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옵션 선택 시 또는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 복도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팬트리 내 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으며, 내부 벽체는 도배로 마감됩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가구판넬이 추가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84A/84C 타입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또는 84C 타입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옵션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드레스룸 특화	74A	미설치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 파우더장 + 천장형 제습기 + 시트판넬	74A	4,650,000	-
	74B	미설치	가구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 파우더장 및 불박이장 + 천장형 제습기 + 조명기구 특화	74B	6,310,000	
	84A	미설치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 파우더장 및 장식장 + 천장형 제습기 + 시트판넬	84A	7,050,000	
	84B			84B	6,930,000	
	84C			84C	6,160,000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파우더장 및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선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가구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84A/B/C 타입의 디자인 시스템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84A/B/C 타입의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드레스룸 내부 벽체는 시트판넬로 마감되며 (74B타입 제외), 타입별로 적용 부위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KY1005P)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자동으로 배수되는 타입으로, 배수배관이 매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 파우더장 및 불박이장/장식장은 조명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을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유상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침실 불박이장	74A	미설치	침실3 불박이장	74A	1,000,000	-
	74B			74B	1,000,000	
	84A	미설치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84A	1,920,000	
	84B			84B	1,660,000	
	84C	미설치	침실3 불박이장	84C	1,34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 84A/B 타입 침실2,3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 가로폭 사이즈는 축소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는 각 평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제공되는 냉매박스 및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C 타입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침실 불박이장 선택형(2안) 옵션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용도실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다용도실 수납 특화	전타입	습식 다용도실	건식 다용도실 1. 바닥레벨 변경 및 대형타일 (600*600 / 세탁기 설치 부위 제외) 2. 수납장 설치 3. 로봇청소기 급수용 공배관 추가 4. 손빨래 수전 삭제	74A	320,000	-
				74B	420,000	
				84A	320,000	
				84B	360,000	
				84C	390,000	

- 다용도실 수납 가구의 색상, 규격, 하드웨어 등 상세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다용도실 레이아웃에 따라 바닥레벨 변경 구간 및 수납장의 설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난방 구간이 상이하며, 로봇청소기 급수용 공배관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다용도실 수납 특화 옵션 선택시, 손빨래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3. 라이프업 키친(유상)

■ 주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5안			
주방 특화	74A 74B	1. 기본형 주방가구 'ㄷ'자형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74A	1,040,000	-
					74B	1,230,000	
			3안	1. 기본형 주방가구 'ㄷ'자형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한스그로혜)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6. 주방장식장	74A	6,370,000	
					74B	6,640,000	
	84A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84A	950,000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3안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한스그로혜)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6. 아일랜드 + 주방장식장 + 팬트리 특화 (폴딩도어 + 수납선반)	84A	8,840,000	

	84B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84B	1,010,000	-
			3안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한스그로헤)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직부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6. 아일랜드 + 주방장식장	84B	5,530,000	
	84C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국산 4. 기본 조명 5. 와이드 싱크볼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84C	79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미 선택 시
			3안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한스그로헤)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6. 아일랜드 + 팬트리 특화 (폴딩도어 + 수납선반)	84C	7,390,000	-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미 선택 시 -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
			4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84C	79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5안	1. 기본형 주방가구 'ㄱ'자형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외산 (한스그로헤)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와이드 절곡형 싱크볼 6. 아일랜드	84C	5,260,000	

-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진명홈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되며, 별도의 싱크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특화조명기구는 본공사 시 마감품질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커버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공사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84A/84C 타입 복도 수납 특화 선택형(2안) 옵션 선택 시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옵션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 냉장고장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방 냉장고장	전타입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3컬럼 냉장고 패키지 + 냉장고 상부장 + 키큰수납장	전타입	4,690,000	-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삼성전자 제품(RR40C7995AP/RZ34C7865AP/RQ34C7(8/9)45AP)으로 설치됩니다. (도어열림 좌우방향에 따라 일부 모델명이 변경될 수 있음)
- 3컬럼 냉장고 패키지의 마감 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새틴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냉장고 냉장고 패키지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3컬럼 냉장고 냉장고 패키지 선택시 설치되는 키큰장의 가구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설치 수량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TV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방TV	전타입	미설치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전타입	600,000	-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4. 라이프업 바스(유상)

■ 욕실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욕실 특화	전타입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해당 욕실) 5. 전자비데 (욕실2)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고급형 국산 수전 3. 외산도기(파포니 / 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해당 욕실) 5.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6.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 (해당 욕실)	전타입	4,130,000	-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에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가 사각선반에서 원형선반으로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 및 배수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3안			
욕실 복합 환풍기	74A 74B 84A 84B	일반형 욕실배기팬	2안 욕실복합환풍기 (2개소) (힘펠/FHD3-C150P MT)	74A	1,200,000	-
				74B	1,200,000	
				84A	1,200,000	
				84B	1,200,000	
	84C	일반형 욕실배기팬	2안 욕실복합환풍기 (2개소) (힘펠/FHD3-C150P MT)	84C	1,20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미 선택 시
			3안 욕실복합환풍기 (3개소) (힘펠/FHD3-C150P MT)	84C	1,80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또는 3안)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C타입 세대구분형 또는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3안)은 3개소(욕실1/2/3)로 적용 됩니다. (세대구분형의 경우 욕실1은 별도로 구성되는 원룸형 세대에 속함)

5. 평면 옵션 (유상)

■ 침실3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침실3 특화	84B	침실3, 알파룸 분리	침실3, 알파룸 통합 + 붙박이장 + 조명기구 특화	84B	730,000	-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및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타입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3안			
평면 특화	84C	기본형	2안 세대구분형 (욕실3 특화마감 포함)	84C	18,410,000	세대구분형 / 서브마스터룸형 선택 시 평면 구성에 따라 일부 옵션 선택 제한
			3안 서브마스터룸형 (욕실3 특화마감 포함)	84C	10,460,000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분형 또는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평면 구성에 따라 일부 옵션은 선택 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분형 또는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3 내부 특화 마감(벽/바닥:유립산타일(600*1,200/300*300), 외산세면대, 벽걸이 양변기, 액세서리류 색상 특화 등)이 포함됩니다.

- 세대구분형 또는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3의 배수는 벽부형 층상배관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구분형 또는 서브마스터룸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욕실3에 의한 소음이 위/아래층 근방 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기본 세대와 별도로 구성되는 원룸형 세대 사이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 WD(목문)이 설치되며 잠금장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원룸형 세대에 특정브랜드의 세탁기가 싱크 하부장 사이즈상 설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원룸형 세대에 에어컨 설치 시 해당 에어컨의 실외기는 기본 세대의 실외기실에 설치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원룸형 세대를 위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환기스위치 등이 추가되며, 각각 별도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홈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원룸형 세대를 기본 세대 월패드에서 제어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제어가 불가능 합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원룸형 세대의 실외기실은 없으며, 기본 세대의 실외기실에 별도로 마련된 전기차단기에 실외기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기본 세대 사이의 벽에 스위치 및 콘센트,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등이 노출되어 배치되고, 이에 따라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6.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	수량	제조사	위치	금액	비고
74A,B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 침실1	3,0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600,000	
84A	1안	2대		거실, 침실1	3,2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84B	1안	2대		거실, 침실1	3,2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0	침실3 특화 선택형 (2안) 선택 시
	3안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900,000	침실3 특화 기본형 (1안) 선택 시
84C	1안	2대		거실, 침실1	3,2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미 선택 시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 침실3(원룸형 세대)	6,900,000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원룸형 세대용 단독 실외기 포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4개소(거실, 침실1/2/3)인 매립형 냉매배관과 각 침실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준공이후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월패드에서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수량 및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무선리모컨을 제공합니다.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컨 1개 지급)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실외기실 내 고용량 스위치와 침실에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는 세대는 옵션 적용에 따라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가 미설치됩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준공이후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월패드에서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제공되는 냉매박스 및 콘센트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C타입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형(3안)의 경우 원룸형 세대용 단독 실외기가 설치되며 기본 세대내 실외기실에서 가동됩니다.

7. 시스템 청정환기(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선택형	수량	제조사	위치	금액	비고
74A,B 84A,B	1안	2대	삼성전자	거실, 침실1	1,980,000	-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940,000	-
84C	1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
	2안	3대		거실, 침실1, 침실2	2,960,000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선택 시
	3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940,000	세대구분형 평면 특화 옵션 미 선택 시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유상옵션 선택시 미선택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 그리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청정환기 유상옵션 미 선택 시에는 각 실에 전열교환기와 연결된 급기용/배기용 디퓨저가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청정환기 유상옵션 선택시는 전열교환기 급기배관에 연결된 시스템청정환기 장치 설치 및 전열교환기에 연결된 배기용 디퓨저가 별도 설치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 및 환기장치/배관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유상옵션 선택시, 각 실 시스템청정환기 콘센트가 시공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빌트인 가전(유상)

(단위: 원, VAT 포함)

타입	구분	선택형	규격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전타입	전기쿡탑	1안	인덕션3구	경동나비엔	ERI-4403	650,000	-
		2안	인덕션3구	디트리쉬	DPI-4320B	1,980,000	-
	전기오븐	1안	일반형	삼성전자	NQ36A6555CK	450,000	-
		2안	고급형		NQ50T8539BK	850,000	-
	식기세척기	1안	일반형	삼성전자	DW80F73Y1UEW	1,100,000	-
		2안	고급형		DW80F75K1UAP	1,400,000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기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제조사:경동나비엔/GRB-5003)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의 색상은 일반형 : 에센셜화이트, 고급형 : 새틴화이트이며, 색상의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식기세척기 설치에 따라 주방가구 하부 걸레받이는 해당 폭만큼 단절되고 별도의 마감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추후 시공을 고려한 전기콘센트 및 전기 차단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납입시기	계약 시	입주 시	계약금	우리은행	1005-004-836103	(주)대우건설
납입금액	10%	90%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건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잔금 납부 :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금 선납시 선납에 따른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는 약정일자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가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 납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복도, 침실, 알파룸, 드레스룸 등 <타일, 석재>현관, 현관 팬트리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발코니 바닥, 발코니 배수구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및 배수슬리브
벽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 타일, 시트지, MDF판 등), 주방벽체타일, 경량칸막이(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걸레받이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벽 도장
천장	초배지, 천장지, 반자돌림, 천장도장,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 박스, 발코니천장도장, 무선AP, 스피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립형 조명등기구, 비상조명등
욕실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 인조강화대리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샤워부스 일체, 욕실장, 욕조,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조적,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배관·배선, 통신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장,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주방벽체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렌지후드, 쿡탑, 전기오븐 등 주방 가전일체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배선, 통신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시스템)	
창호	목창호(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문짝, 손잡이철물, 경첩 외 하드웨어 일체), 실외기실 도어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기타사항	발코니 수전 일체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약식표기)	74A	74B	84A	84B	84C
마이너스 옵션금액	32,641,000	32,951,000	37,134,000	37,576,000	36,883,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상한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앞선이 불가 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앞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9

단지 여건 사항

1. 단지 외부여건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가 속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사업주체 : ㈜풍무역세권개발)과 관련한 각종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변경 포함)에 따라 단지 외부 여건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가 속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사업주체인 (주)풍무역세권개발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본 단지가 속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사업주체 : ㈜풍무역세권개발)의 기반시설 준공 후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에 계획된 공원, 녹지(완충녹지 포함), 공공공지, 도로, 교통안전시설, 소음저감시설 등 기반시설은 별도의 사업주체가 진행한 사업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 세부시설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적, 폭, 길이, 경사, 레벨, 개소 등이 분양홍보물(모형, CG,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 표현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아파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외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소음 등의 불편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요 기반시설 : 도로(단지 북,동,남측 인접도로 포함), 도시철도(풍무역 포함), 공원(단지 서,남측 근린 공원 포함), 초,중학교(예정)
- 본 단지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며, 항공기 운항 항공로에 위치하여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임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 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항공기 운항 항공로에 위치하여 입주후에도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 포함) 설치 대상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항공장애 표시등 등의 설치로 인해 시각적인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항공장애 표시등 등의 설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초등학교 관련 사항

- 본 단지 입주인 자녀 초등학생은 (가칭)풍무역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금파초등학교에 임시 배치되며, 신설학교가 개교 (2029. 3. 예정) 할 경우 (가칭)풍무역초등학교 또는 사우초등학교로 재배치 될 예정입니다.
- 임시 배치 기간 동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학 할 예정입니다.

• 중학교 관련 사항

- 중학교 신입생(입학 예정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에 따라 김포중학군[감정중, 금파중, 김포중, 김포여중, 양도중, 풍무중, (가칭)풍무역중]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중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해당 중학군 내 결원이 있는 중학교에만 전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현행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2028학년도 중 김포중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한 경우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풍무역중으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칭)풍무역중은 김포중학군 내 기존 학교인 김포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및 학교명 변경(2027학년도 예정) 후 신설대체이전(학교명, 학교 역사 등 보존)을 통해 개교 추진 예정입니다.

• 고등학교 관련 사항

1) 김포시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방법은 향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1) 신설 예정교의 개교 여부 및 개교 시기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승인 여부 및 기타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배정 방법 등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내부여건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생활권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한 아파트 단지 배치에 따라 일조, 조망, 채광 등의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 학교 (신설 예정 포함) 로부터의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옥상층(303동, 306동, 308동, 310동, 312동)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옥상층(303동, 306동, 308동, 310동, 312동) 및 지하1층 헬룸 등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방 파우더 룸에 콘센트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 기구 적용시, 해당 기구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판매시설용), 전기인입 맨홀,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조경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3. 공통사항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로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 또는 조경석쌓기로 계획될 수 있으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온수는 지역 열원을 활용한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되며, 필로티 위층 및 최하층, 최상층 세대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및 경관심의)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주차구역은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는 지하1층 차량 이동통로 2.7m, 지하 2층 차량 이동통로 2.3m 이며, 주차공간은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상으로부터 지하 2개층으로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반과 접하여 지하층이 계획되는 곳은 습기 및 습한 외기 유입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하는 각 동별로 접근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코어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선에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및 유도블록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동별/층별/위치별 여건에 따른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2개소이며, 단지 내에는 차없는 보행자도로이며, 비상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차량, 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상이동 필요)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1층 주차장으로 접근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1, 302, 305, 306, 312동 1~3층 저층세대의 경우 문주 구조물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탐라이트)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관소 설치로 인해 소음, 악취, 분진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 기타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공원, 공공공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리너리 스튜디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그리너리 스튜디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는 옥외 및 외부,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동의 세대 및 인근지역에는 소음, 분진, 진동전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보행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1층 필로티내부 및 각 동 전후면, 단지내 동선 근방 등에 D/A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전달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설치위치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열교환기실, 기계실, 정화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는 303동, 306동, 308동, 310동, 312동 옥상 층에 설치 될 예정이며, 중계장비는 303동, 306동, 308동, 310동, 312동 옥상층 및 지하 1층 헬룸 #4, #7, #9, #14, #17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옥탑층(측벽 포함)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301, 302, 310, 311, 312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및 옥외/옥내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해 소음, 악취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01, 302동에 인접한 주문주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량 승하차구간, 입주자 동선, 키즈스테이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으로 인해 인근세대에 소음, 진동, 시야차단, 프라이버시 침해, 빗공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주문주와 부출입구의 부문주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5, 306동 사이의 부문주 및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로 인해 소음, 진동, 시야차단,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2동, 307동, 308동 지하 1층에 인접하여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용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및 배기팬 등이 지하층 및 지상층에 옥외와 옥내에 설치되어 인근 동의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악취, 미관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302동 서측과 307동 남동측에 옥외계단과 엘리베이터, 303동 남서측과 307동 남서측에 옥외계단이 설치되어 엘리베이터 및 계단 이용으로 인해 소음, 진동, 시야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302동 남동측에 인접하여 지하1층에 시니어클럽(경로당)이 계획되어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가 옥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310, 311, 312동과 인접한 위치에 어린이집, 301동과 인접한 위치에 다함께 돌봄센터, 302동과 인접한 위치에 키즈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가 옥내에 설치 되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11동 인근에는 지역정압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역정압기의 설치위치 및 설치유무는 추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2,306동 인근에는 경비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1동은 하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실외기 동작음, 미관 훼손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행통로 양측에는 주민공동시설 및 독서실용 실외기실의 루버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통로쪽으로 실외기실의 바람이 토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 중 바람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조정구간 일부구간에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이 배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조경/색채/입면 관련 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일부 주동 측벽에 조형형 사인물이, 일부 옥상구조물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동에 인접한 상부층 세대는 빛 공해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고, 설치 개소 및 위치는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물 옥상의 설비 시설물은 옥상시설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 부착물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포장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의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 조광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의 녹지,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보행통로, 수목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대체시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시설 중 코트의 규격은 국제 기준 또는 전문기관의 규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훼손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층으로 자갈 배수층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클럽)은 외기에 노출되는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면의 조경부분은 추후 우수피해 방지등을 이유로 조경부분 높이가 변경되거나 차수판 설치등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 관련 사항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고,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준공 후 일정기간(입주개시 후 약 24개월) 동안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기간 동 PIT 일부 구간은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사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동선 및 접근성이 상이하며,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면적 등은 각 단지별 규모에 따라 각각 계획되었으므로 단지 간 동일한 구성, 면적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시니어클럽(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난방, 가스요금 등은 입주민의 공동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천장 속에는 기준층 세대의 각종 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524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김포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김포시(경기도 김포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524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김포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김포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김포시(경기도 김포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주요 고지 사항]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됩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주체 겸 토지공급처인 (주)풍무역세권개발과 해당 토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유자인 (주)무궁화신탁으로부터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소유권이전 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내진 I 등급,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0.204g입니다.
- 외기에 노출된 부위는 탄산화저항도료가 시공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제물별 주기를 감안하여 재도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관리주체 유지관리 사항)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MD계획이 미확정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부대복리시설의 인접동 및 세대에는 실외기 및 필요에 의해 설치된 각종 환의 소음, 진동 및 미관훼손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인접동/세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침실 내 도어 후면 및 벽면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유상옵션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평면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C타입 세대구분형 또는 서브마스터룸형 옵션 선택시 복도 팬트리가 욕실3으로 변경되어 시공 되며, 일부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부 세대의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하부 세대에 욕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3 배관이 층상배관으로 설치되어, 유지보수 필요시 벽체 및 바닥 철거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84C 타입의 경우 세대구분형 평면 옵션 적용 여부에 따라 침실3 위치에 주방싱크대와 빌트인세탁기가 위치함으로 세대구분형 옵션선택 세대의 하부 세대에서는 일부 소음이 침실3 부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84C 타입의 경우 위/아래층이 세대구분형 및 서브마스터룸형 선택 시 욕실3에 의한 소음이 근방 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건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건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2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일부 구조에 따라 설치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건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욕실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월타일과 바닥재 사이에는 온도 팽창 등으로 인한 바닥재 신축으로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부위는 코킹처리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옵션품목)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옵션품목)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타일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건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섬유판)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기기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사양,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또는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 옆 발코니-2의 천장에는 환기덕트, 가스배관, 소화배관 등이 설치되어 다용도실 천장고에 제한이 있으며, 그 설치 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는 급배기 디퓨저(세대 내부용 환기구)와 덕트호스로 연결되어 외부 공기 급기 및 내부 공기 배기를 통한 환기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에는 기본적인 공기청정필터(프리필터 및 급기-헤파필터, 배기-미디움필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필터교환 및 배관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열교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배관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유지관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를 위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저가 거실 및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용 덕트호스는 유연성이 있는 재질이며, 시공 시 덕트의 재질 및 모양은 타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원, 사각, 휜 등의 여러 형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청정환기 유상옵션 선택 시 각 실에 급기용 디퓨저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기용 디퓨저의 설치위

치는 타입별로 변경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설비, 소방용 설비, 조명 설비 등이 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될 경우, 각 기능에 따라 배치되고, 일직선상 배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상부장 하부조명의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유입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상부층 세대 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세대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마감재 및 점검구 규격,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 발코니 및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욕조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크기, 길이, 두께 포함)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도어는 세부 사양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냉매배관은 4개소(거실(스탠드용), 침실(벽걸이용))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 품목으로, 유상옵션 선택 시 해당냉매배관 4개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냉매배관 4개소는 천장형 제품을 위한 배관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기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립냉매배관을 이용한 에어컨 설치는 입주자 선택사항으로, 제품별 실외기 용량, 실내외기 연결 방식, 실외기실 면적과 루버크기 등에 따라 전설 및 추가 시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의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 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전동루버 작동 오류시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는 입주안내문을 참조하여 에어컨 설치 후 실외기에 센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전동루버는 루버 개폐를 보조하는 수단이며, 에어컨 가동 시 입주자님이 필히 육안으로 개폐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동루버는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 수동조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지급되는 매뉴얼 이외의 방법으로 수동 조작할 경우 손잡이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민 부담의 유상 보수 필요)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수전, 배수배관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설치(건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됩니다. 실외기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환기용 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입상배관 및 벽체관통 구간 등이 노출되어 미관에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 및 벽체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장비의 사양, 제조사,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저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물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발코니에만 선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저층부 세대(1층)는 저층부 세대의 배수배관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발코니에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최하층 세대에는 상부층 세대들의 배수를 위한 입상관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건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지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제공 및 옵션제공품목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마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가전 상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조기 2단 적재 불가 등)
- 세대별 가스사용량 및 급수, 급탕, 난방사용량은 원격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및 급수 등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별 급수,급탕,환탕,난방 공급 및 한수용 입상배관은 각 동 코어별 PD 내 동일한 공용배관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공용 또는 단독 입상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 시 가동으로 인해 발전기 배기구 근처 인근 세대로 매연 유입과 소음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아파트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 (<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부대시설/공용부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법적기준 내)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차량진출입 차단기,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주변에 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RC 복합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구 주변 및 덮개 등의 형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헬륨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인근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마감재,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의 공공공지 및 필로티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헬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지상 출입구 및 지하 동출입구의 경우, 주동의 구조 계획에 따라 동별로 출입구 폭, 통로 폭, 진입 동선 길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 경사로 등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 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 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태양광 설비의 형태 및 수량,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및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며, 가스정압기가 설치시 향후 가스 정압실의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공간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기계설비를 위한 각종 설비용 배관, 가스배관 및 덕트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가스사용량은 원계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지하PIT층 및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내 설치된 펌프의 동작으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인근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공용부 상부 천장속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명칭은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평면 형태에 따라 우편함의 형태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건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된 사항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VR)은 분양완료 후 운영중지 및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건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건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환기스위치,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포함, 점검구, 전기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발코니수전 등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시 각 단위세대 타일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 위치 및 수량이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공동주택용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 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건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분양안내 등) 및 홈페이지는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사업지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및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분양안내, 홈페이지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로고사인 위치, 외벽마감 식재 및 포장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최종 사업계획 내용, 법규 변경, 시공 시 현장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중 일부사항(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은 설계변경 예정 도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에 표기된 단위세대 난간은 설계변경(예정) 전 도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난간 관련한 자세향 사항은 건본주택 내 건립된 건립타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본 분양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과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과 단지명에 사용된 사업주체 소유의 브랜드는 사업주체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RC 복합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후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창호 등이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안내

-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에 따른 분기별 감리보고 시 입주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일 : 2028년 1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2개소, 어린이집 1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시니어클럽(경로당)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MDF실 1개소, 키즈스테이션 2개소, 주민공동시설 1개소(그리너리튜디오-작은도서관, 독서실(남/여), 멀티룸, 탁구장, 다목적실, 락커룸 및 사우나(남/여),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클럽 등)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701,092,000,000원	제 01212025-101-0004900 호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웬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로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구분 | | 기준 충족 여부 |
|--------------------------------|-----------|----------|
|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 충족 |
| 열원설비 | | 충족 |
| 창 면적비 | | 충족 |
| 의무사항 이행여부 | 건축부문 설계기준 | 충족 |
| | 기계부문 설계기준 | 충족 |
| | 전기부문 설계기준 | 충족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김포 풍우역세권 B3BL 공동주택
- 신 청 자: 디에스케이피에프(주)
-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32번길 풍우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
-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층을 차단성능	★
2. 중량층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질설 급배수 소용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동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토양·지하수 오염·생태훼손(방기·출발가한 등)	해당없음
3. 토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지진소 에너지밀 가설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오염원 저감(IPPC)의 사용	★★
11. 자연의 자원을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관시설 설치	★★★★
16. 폐물관리	★★
17. 폐물 및 유출지수 이용	★★★
18. 중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배치지 120g/㎡)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 개요]

건축물명	김포 풍우역세권 B3BL 공동주택
건축주	디에스케이피에프(주)
준공(예정)일	2028년 8월 31일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732번길 풍우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
층 수	지하 2층, 지상 29층 / 1524세대
면 적	248,920.6761㎡ (참가면적: 247,069.4498㎡)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합시설
설 계 자	러디에이그린에너지인텔리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5-095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5.09.29. ~ 사용승인일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 ☆ ☆

분야	평가율 (%)
토지이용 및 교통	33%
에너지 및 환경오염	59%
재료 및 자원	57%
폐물관리	70%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39%
실내환경	59%

2025년 9월 29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김포 풍우역세권 B3BL 공동주택	인증번호 : 25-주-에-1-0148
준공연도 : 20280831	평가자 : 노준현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대로 732번길 풍우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4+29층 (12개동)	분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48920.6761(㎡)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기간 만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그리이그린에너지인텔리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4.1	56.9	43.5	9.6
급탕	30.7	38.1	28.0	6.3
조명	13.5	12.1	33.1	

67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	---------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 I 등급, 내진Ⅱ등급)으로 표기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램프 및 주차장 차로 : 2.7m / 지하2층 램프 및 주차장 차로 : 2.3m	2.7m

• 주차장 차로의 높이 및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등 계획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	(주)진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6,359,464,100	916,256,000	1,241,999,000	299,200,000
사업자등록번호	139-81-13044	610-81-19493	215-81-88868	135-81-18222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 공시내용

구분			금 액(원)	구분			금 액(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49,217,772,956	공사비	건축	유리공사	3,968,256,000
	기간이자		17,586,980,190			타일공사	4,960,321,000
	필요적 경비		18,896,797,342			돌공사	11,656,753,000
	그 밖의 비용		41,932,185,877			도장공사	3,968,256,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13,769,311,000			도배공사	2,976,192,000
		흙막이공사	-			수장공사	4,464,289,000
		비탈면보호공사	458,977,000			주방용가구공사	7,688,497,000
		옹벽공사	826,159,000			잡공사	3,720,239,000
		석축공사	-		급수설비공사	6,686,327,000	
		우·오수공사	3,625,919,000		급탕설비공사	3,226,735,000	
		공동구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6,686,327,000	
		지하저수조및 급수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4,191,429,000	
		도로포장공사	2,203,090,000		난방설비공사	3,792,245,000	
		교통 안전시설물 공사	367,182,000		가스설비공사	1,530,204,000	

		정화조시설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598,775,000
		조경공사	13,815,209,000			특수설비공사	-
		부대시설공사	1,422,827,000			공조설비공사	-
	건축	공통가설공사	12,400,802,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5,685,871,000	
		가시설물공사	4,464,289,000		정보통신공사	14,316,715,000	
		지정 및 기초공사	14,136,914,000		소방설비공사	16,422,114,000	
		철골공사	-		승강기공사	6,553,266,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21,775,871,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9,369,673,000	
		용접공사	-		이윤	18,106,434,000	
		조적공사	4,712,305,000	간접비	설계비	2,160,209,520	
		미장공사	6,696,433,000		감리비	8,816,919,100	
		단열공사	3,224,208,000		일반분양시설경비	17,644,128,000	
		방수·방습공사	2,976,192,000		분담금 및 부담금	6,165,851,000	
		목공사	6,200,401,000		보상비	-	
		가구공사	8,184,529,000		기타사업비성 경비	27,235,923,664	
		금속공사	4,216,273,000		그 밖의 비용		100,232,413,351
		지붕 및 환통공사	992,064,000	합 계		1,001,560,000,000	
		창호공사	14,632,946,000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금액(원)	항 목		금액(원)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 기간이자	17,586,980,190	건축비 가산항목	벽식혼합무량판구조	8,942,217,600
	제세공과금	18,896,797,342		공동주택성능등급	7,049,998,108
	말뚝박기공사비	24,967,588,645		법정초과 복리시설	3,754,233,406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13,613,720,309		사업승인 조건부	10,350,278,880
	필요적 경비	3,350,876,923		인텔리전트설비	53,920,280,310
	소 계	78,415,963,40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6,401,322,128
				지하층 증고상향 비용	1,732,445,010
				법령개정 관련 비용	5,032,106,600
				보증수수료	3,049,568,424
				소 계	100,232,450,466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사	사업주체 겸 시공사
상호	디에스케이피에프비 주식회사	(주)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1110-1호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캐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0924679	110111-2137895

※ 본 분양물건은 해당 사업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에서 시행,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가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 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및 보존등기 상의 사업주체는 토지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 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로 명기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수입금 계좌의 명의는 디에스케이피에프브이(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인 코리아신탁(주)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 ①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사업주체)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사업주체)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③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④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 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⑦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겸 사업시행자”(사업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⑧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매도인과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의 조약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과 자금관리업무 모두 매도인에게 포괄승계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의 업무는 종결, 면책됨을 확인합니다.

■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 홈페이지

- 주소 : <https://www.prugio.com/hb/2025/themark/>

■ 분양문의

- 1661-335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 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